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4,030,819	16,920,925
일반회계	555,421,041	16,662,631
특별회계	8,609,778	258,293
기타특별회계	8,609,778	258,2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2,656	11,780
의료급여기금	334,598	10,03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05,605	3,168
지하수관리	38,711	1,161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400	42
기반시설	339,084	10,173
주차장	7,397,724	221,9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6,89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